

安龍福의 號牌

權 五 曄*

(e-mail: dongšana@hanamil.net)

목차

1. 서문
 2. 기록의 안용복
 - (1) 조선의 기록
 - (2) 일본의 기록
 3. 안용복의 호패
 - (1) 牌面의 合體字
 - (2) 年三十三의 허실
 - (3) 四尺一寸의 신장
 4. 결론
-

1. 서문

조선의 기록은 안용복의 신분을 櫓軍·鬱陵子山監稅將으로 전하고, 『星湖僊說』이 英雄儔匹이라고 칭송하면서 賤出이라는 신분이 애석하다는 말을 했으나 그 실상은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鬱陵子山監稅將은 櫓軍이나 賤出과는 모순되는 官名으로 보기 쉽다. 일본의 기록에는 鬱陵子山監稅將을 포함하는 여러 관명이 전하는데, 주로 鳥取藩에서 정리한 『控帳』·『御用人日記』·對馬藩이 정리한 『竹嶋紀事』, 당시 天領이었던 隱州의 代官이 정리한 『元錄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이하 元錄覺書), 후세의 鳥取藩士 오카지마 마사오시(岡嶋正義)가 편찬한 『因府年表』·『因府歷年大雜集』(이하 大雜集)·『增補珎事錄』(이하 珎事錄)·『竹島考』 등이 안용복의 신상과 관명을 전한다.

* 忠南大學校人文大學 名譽教授

그런데 岡嶋는 자신의 편찬물에 안용복의 號牌라는 것을 筆寫했는데, 그곳에는 飜刻하기 어려운 合體字, 안용복과 모순되는 신장과 연령의 기록이 있고, 바로 그 옆에, 문자의 傳寫에 誤謬가 있으니 糾明할 필요가 있다는 注를 붙였다. 연구자들은 그 주에 동의하면서도 허실의 규명에는 소홀하다. 그러면서도 안용복의 실체를 논할 경우에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려 한다.

岡嶋正義의 기록에 의하면 1693년의 안용복은 42,3세로, 裨將이나 兵使·行守로 추정할 수도 있는 헨치우를 칭했다. 납치된 안용복은 隱岐에 이후에 여러 차례 진술했는데, 그때마다 前述한 내용과 비교 檢證 받고 있었다. 長崎에서는 奉行과 鳥取藩·對馬藩의 사자가 동석한 가운데, 鳥取藩에서 진술한 내용을 검증하여, 안용복의 나이를 42, 3세가 아닌 40세로 訂正했다.

납치되었다 송환되고도 2년 형을 받았던 안용복이 1696년에는 對馬藩의 비리를 소송하겠다고 鳥取藩을 향하다 隱岐에 漂着하자, 代官所를 찾아가 표착한 경위와 鳥取藩을 방문하는 목적을 밝히고 협조를 요구했다. 그러자 代官所는 안용복 일행이 제출한 서류와 일행과 대담하고 관찰한 내용을 『元綠覺書』로 정리해서 보고했는데, 그 보고서에는 「安龍福午歲四十三」이라는 나이와 「通政大夫安龍福年甲午生」이라고 관명 등을 밝히는 호패의 내용이 있어, 1654년(갑오년) 생 안용복이 1696년에는 43세로 通政大夫를 칭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곳의 통정대부는 岡嶋正義의 편찬물이 전하는 三品堂上臣安同知·朝鬱兩島監稅長臣安同知·朝鮮國安同知 등과 품계를 같이 한다. 또 通政大夫는 1693년에 칭했다는 裨將과 연계 가능한 관명이다. 이처럼 모든 기록이 동일한 내용을 전하는데, 岡嶋正義가 전사했다는 호패만은 이질적이다.

庚午年(1690)에 東萊府에서 發付한 호패에는 해독하기 어려운 合體字가 있는데, 그것을 用卜으로 해독하고 龍福·安龍福으로 전환하는데, 성씨가 기재되지 않은 이유나, 用卜을 安龍福으로 전환하는 근거의 설명이 없다. 그 뿐만이 아니다. 신장은 이해할 수 없는 4척1촌(123cm)의 短軀이고, 나이도 다르다. 그런데도 안용복의 호패로 인식하고 그 내용에 근거해서 안용복의 실체를 판단하려 한다.

『元綠覺書』와 岡嶋正義의 기록을 종합하면, 안용복은 1654년에 부산에서 태어나, 1693년에는 40세로 裨將·兵使·行守를 칭하며 朴於屯을 下人으로서 거느렸다. 억류된 상황에서도 필요한 것을 서슴지 않고 요구하여 暴惡·猛省強暴하다는 소문이 나, 이송시킬 때는 부녀자와 유아의 접근을 금하는 경고를 내릴 정도였다. 그런 안용복의 신장을 4척 1촌으로 한 호패는 안용복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 1696년에 43세의 安龍福이 通政大夫·三品堂上臣安同知·監稅將 등을 칭한 사실을 전하는 기록들과는 모순되는 내용이다.

영토문제를 주도하던 南九萬은 對馬藩이 사실을 왜곡한다는 사실을 알고 새

로운 외교노선의 구축을 구상했는데, 안용복이 1696년에 鳥取藩을 방문해서 전개한 활동이 그것과 내용을 같이 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구상 자체가 안용복이 제공했던 정보에 근거한다. 말하자면 남구만은 안용복이 제공한 정보에 근거해서 새로운 외교노선의 구축을 구상했고, 그것을 안용복이 실행한 것이다.

이런 둘의 관계를 생각하면, 안용복이 鳥取藩을 방문하여 同知·監稅將·通政大夫 등의 관명을 칭한 정통성을, 남구만이 구상한 외교정책에서 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안용복이 1696년에 칭한 관명은 1693년에 칭한 裨將이나 兵使나 行守 등과 연계하는 것이 호패의 合體字를 임의 번각한 私奴와 연계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다. 33세의 나이와 123cm라는 身長도 안용복의 언행과는 어울리지 않아, 호패는 안용복이 소지했다 해도, 안용복의 호패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2. 기록의 안용복

(1) 조선의 기록

안용복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조선의 기록은 많지 않다. 『肅宗實錄』에는 조선이 칭한 漁人·漁採人·安龍福·人·犯人·氓·渠·龍福·殘氓·奸民·狂蠢·愚民 등과 일본이 칭한 罪漁人·漁氓·朝鮮人·貴國人 등의 표기가 있다. 안용복 자신은 我·吾·渠 등으로 칭하다 備邊司에서는 鬱陵子山兩島監稅將을 가칭한 사실을 밝혔고, 안용복의 死罪를 논하는 자리에서는 罪人·亂民·愚濫·無知常識·陰凶 등이 언급되었다. 대부분이 卑稱으로 鬱陵子山兩島監稅將과는 이질적인 호칭이었다.

후대의 『蘭谷集』(1725)은 東萊櫓軍, 『星湖僿說』(1740)·『五洲衍文長箋散稿』(19세기 중엽)은 戰船櫓軍, 『春官志』(1744)는 隸戰舡櫓軍, 『和國志』(1763)는 長隸戰船能櫓軍, 『疆界考』(1756)·『增補東國文獻備考』(1770)·『萬機要覽』(1808)·『研經齋全集』(1840)은 隸櫓軍, 『碩齋稿』(18세기말)·『熙朝駉事』(1866)는 隸水軍 등을 전하며 倭語에 능하다는 사실을 전한다. 『星湖僿說』은 특이하게

안용복은 英雄儔匹이다. 일개 賤出로 만사의 계책으로 국가를 위해 강적에 대항했다¹⁾

1) 愚案安龍福直是英雄儔匹以一卒之賤出萬死之計爲國家抗強敵(중략)傳介子陣湯(李瀾『星湖

안용복의 공을 중국의 傅介子和 陣湯에 비유하며 천출이라 표했는데, 근거의 제시가 없어 출신에 비해 공이 크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兵曹判書 知中樞府事 등을 지낸 李瀾에게 노군은 미친한 직종임에 틀림없다.

안용복이 假稱했다는 鬱陵子山兩島監稅將은 櫓軍이나 賤出과는 모순되는 관명이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詐稱으로 보기도 하는데, 안용복이 그 사실을 비변사에서 밝혔고 남구만이 언급한 것을 보면,²⁾ 그렇게 단정할 수만은 없다. 조정 관리들이 사형을 주장하는 가운데 남구만은 안용복이 對馬藩의 비리를 밝혀낸 공을 언급한 후에

안용복은 표풍의 잔민으로, 국서도 없이 멋대로 정문 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그래서 조정에서 따로 사신을 일본에 보내 그 허실을 살피려 한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하면 對馬島 왜인이 크게 두려워할 것입니다.³⁾

對馬藩을 신뢰할 수 없으니 사신을 파견하여 사실을 확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대처하자는 주장을 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 殘民이 國書도 없이 明文한 것이 믿기 어렵다는 것인지, 明文한 사실을 부정하는 對馬藩이 의심스럽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殘民이 明文한 사실을 믿기 어렵다, 국서도 없이 정문한 사실이 믿기 어렵다. 對馬藩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경우 등을 상정할 수 있는 의문이나, 이미 안용복이 비변사에서 鳥取藩을 방문하여 對馬藩의 비리를 막부에 소송한 사실을 진술했고, 그 진술에 근거하여 안용복의 사형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즉 안용복이 막부에 소송장을 제출한 사실이 분명해진 상황에서 남구만이 사신을 파견하여 사실을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사형을 주장하는 대신들은 국서를 언급하지 않았다. 영의정 柳尙運은 禁法을 어기고 타국에 明文하여 사단을 일으킨 사실을 거론했고, 병조판서 閔鎭長은 상소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처벌을 요구했으나 국서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다 4) 對馬藩도

〔僉說〕鬱陵島條)

- 2) 龍福之冒禁再往鬱陵及漂到他國假稱監稅將至於上疏呈文挑出事端之罪(『藥泉集』 31, 肅宗 22年10月5日・『承政院日記』 367책, 肅宗22年10月13日)
- 3) 龍福以漂風殘民無國書而自爲呈文不可取信固也自朝廷將欲別遣使臣於日本審其虛實 汝將何以處之云爾 則對馬島倭必大生惻服罪哀乞然後(『肅宗實錄』 肅宗22年10月13日)
- 4) 卽一不畏法禁生事他國之亂民也(중략)亦且如此況此呈文之人(중략)上疏之事(『漂人領來騰錄』 肅宗22年9月30日)

對州는 양국의 사이에서 대처하며, 오로지 通好를 담당하고 있다. 그 역할의 계속은 오래 되었다. 지금 일단 우리 對州를 버리고, 다른 길로 통교의 전달자를 구했다. 그것은 양국의 정약에 어긋난다.⁵⁾

對馬藩이 조선과의 교류를 전담하는 기존의 定約을 안용복이 어긴 사실을 언급했을 뿐, 국서의 언급은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남구만이 사신을 파견하여 국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런 구상은 남구만이 이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對馬藩에 경고한 일도 있다.

남구만은 영의정이 된 직후에는 鬱陵島 爭界에 대한 소신을 정립하지 못했던지 對馬藩의 요구에 따르려 했다. 그러다 지일 인사 尹趾完의 반대의견을 접한 후로, 史書 등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며 울릉도의 탐사를 명하고 按慰官을 東萊府에 다시 파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명을 받고 東萊府로 파견된 접위관 俞集一은 안용복을 면담하고, 對馬藩이 요구하는 竹島之說, 즉 조선인의 울릉도 왕래의 금지를 요구하는 對馬藩의 요구가 막부의 뜻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왜차를 꾸짖으며 우리가 일본에 글을 보내 안용복 등을 침책한 사실을 자세히 말하겠다.⁶⁾

직접 막부에 사신을 파견하여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말하여 외교적 우위를 확보했다. 그런데 對馬藩이 말하는 竹島之說은 안용복이 말한 대로 막부의 뜻과 다른 것이었다. 鳥取藩이 납치한 조선인의 처벌을 막부에 요구하자, 막부는 그 요구와 달리, 조선인을 송환하라는 명을 對馬藩에 내리자, 그 명의 진의를 파악하는 중의를 열었다. 그 자리에서 전번주 소우 요시자네(宗義眞)는 막부가 죽도를 조선령으로 여기는 것 같다며

위의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 일단 막부에 다시 한번 그 뜻을 물어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그런 후에 이쪽이 요구할 내용을 조선에 전달하면 어떻겠는가.⁷⁾ 막부의 뜻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막부의 뜻을

5) 本州處于兩邦之間專掌通好其來久矣今乃一旦捨本州而由他路背定約(權靜·大西俊輝 편역주 (2012) 『竹嶋紀事』 4-2. 한국학술정보, 365쪽.

6) 我國將移書于日本備言侵責龍福等之狀 (『肅宗實錄』, 肅宗20年8月13日)

7) 右之次第一宥公儀江御伺被成思召之程得与御聞被成候上朝鮮江可被仰懸哉与之御事二候所此時之衆儀公命を以朝鮮江被仰達候ハ、違難ニ及申間敷との事二而押而(權五曄·大西俊輝 편역주 (2011) 『竹嶋紀事』1-3, 한국학술정보, 394쪽.

가장해서 교섭하면 문제가 없다는 강경파의 주장에 따라 사자를 파견했다. 말하자면 對馬藩은 막부의 뜻을 확인하지 않고 自藩의 이익을 위한 요구를 하고 있어, 조선이 직접 그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되면 곤란할 입장에 처할 뿐만 아니라 울릉도를 탈취하려는 목적도 좌절되게 된다. 그래서 당황한 것이다.

1693년 4월 18일에 납치되어 12월 10일에 동래부사에게 양도될 때까지 8개월간, 안용복은 각지로 끌려 다니며 각계각층 인사들과 접촉하며 많은 정보를 얻었다. 심문에 응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대응하는 논리를 구축해야 했던 안용복이었다. 그런 안용복이었기에 對馬藩의 요구가 막부의 뜻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그 정보를 兪集一에게 제공하여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했다. 그렇게 유집일을 통해서 안용복이 제공한 정보를 접한 남구만도 안용복의 정보와 경험을 신뢰하고, 그 정보에 근거해서 외교정책을 구상했다. 그것은 남구만의 구상이 유집일이 이미 對馬藩에 실행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고, 안용복이 鳥取藩을 방문하여 전개한 활동과도 같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다. 鬱陵島 爭界를 주도하던 남구만이

조정 측은 대마변을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이상, 아무래도 아국의 섬이라는 증거를 기록하여 동무에 알려야 할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성신으로 처리하여, 죽도에 건너가는 일본의 통로를 금지시키지 않을 리 없다.⁸⁾

對馬藩을 불신하기 때문에 다른 路線을 통해 막부에 사실을 알리는 방법을 언급했는데, 이것은 일찍이 안용복을 면담한 유집일이 활용했던 방법이다. 말하자면 유집일이 실행했고 남구만이 구상하는 대일 외교정책은 안용복의 정보에 근거하고 안용복에 의해서 실행된 셈이다.

안용복이 鬱陵子山兩島監稅將을 칭하며 방문한 곳이 對馬藩이 아니라 鳥取藩이었고, 鳥取藩을 통해 對馬藩의 비리를 막부에 소송한 것은, 對馬藩을 제외하고 다른 노선을 통해 조선의 뜻을 막부에 전달하는 일이었다. 따라서 안용복의 활동은 남구만의 구상을 실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안용복과 남구만의 관계를 직접 언급한 기록은 없으나, 안용복이 제공한 정보나 활동이 남구만의 구상과 동일하여, 안용복이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에 근거하는 외교정책을 수립한 남구만이 그것의 실행을 안용복에게 명하는 둘의 관계는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당시의 막부는 對馬藩이 중간에서 사실을 왜곡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對馬藩의 가신 야나가와 시게오키(柳川調興)는 1631년에, 藩主가 국서를 위조한 사실을 고발하자, 장군은 老中을 파견하여 양자를 심문하고, 1635년에

8) 朝廷方被存込候此上者如何ニも我国之嶋之證據を書立東武江差上候者御誠信を以重而竹嶋ニ日本之通路御止被成間敷事ニ而無之候 (전계주 7, 445쪽).

는 직접 심문하여, 오히려 柳川調興을 유배 보냈다.⁹⁾ 그런 경험이 있는 막부가, 안용복이 전례 없이 對馬藩이 아닌 鳥取藩을 통해 제출한 소송장의 처리를 鳥取藩에 명했다는 것은, 그 소송장을 조선의 국서로 인정했다는 것이 된다. 그것은 1696년의 鳥取藩도 마찬가지였다. 안용복 일행 11인이 방문하자

11인의 이객들을 鳥取府로 맞아들이게 되어, 傳馬 9필을 보냈다<안동지와 이진사 두 사람은 가마에 태웠다 한다>.¹⁰⁾

안용복 일행을 가마와 말을 내어 영접하고 일행을 전담하는 관리를 임명했다. 안용복 일행을 사절단으로 보지 않았다면 취할 수 없는 대우였다. 그리고 鳥取藩은 안용복 일행이 방문한 사실을, 일행이 제출한 소송장 등을 첨부하여 막부에 보고했고, 막부는 그 소송의 처리를 鳥取藩에 명했다. 조선의 뜻을 막부에 직접 전달하려는 남구만의 구상을 안용복이 실현시킨 것이다. 남구만은 그런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국서를 언급한 것이다.

조선은 海禁政策을 취하면서도 생계를 위한 해상 활동은 묵인하고 있었다.¹¹⁾ 1692년의 어민이 國主의 명으로 울릉도에 건너가서 전복을 채취했고¹²⁾ 1693년의 안용복도 東萊府使나 釜山僉使로 추정되는 三界의 샤큐완(上官)의 명을 받아 도해했다.¹³⁾ 어민들이 공적 권력의 허가 하에 동해에 왕래하며 어업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對馬藩의 비리를 막부에 소송하는 것과 같은 일은 釜山僉事나 東萊府使로 추정할 수 있는 지역권력의 한계를 초월한다. 그것은 중앙권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남구만을 필두로 하는 尹趾完과 申如哲 등을 배후세력으로 본다.¹⁴⁾ 안용복은 그런 세력의 밀명을 받았기 때문에 朝鬱兩島監稅長臣安同知騎·朝鮮國安同知乘舟 라는 내용이 기록된 船旗를 걸고 鳥取藩을 방문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일본의 기록

일본의 기록은 안용복의 신분을 다양하게 전한다. 주로 납치된 1693년과

9) 山本博文(1995) 『對馬藩江戸家老』, 講談社, 23쪽.

10) 十一人ノ異客等ヲ鳥府へ御迎へニ相成、傳馬九疋ヲ遣サル<安同知・李進士兩人ハ乘輿ナリニシヤ>(권오엽 편주(2011) 『岡嶋正義古文書』, 선인, 151쪽.

11) 上曰海浦漁氓日日逐利乘船入海勢難一切禁斷以絶其生道(『備邊司謄錄』 肅宗19年11月14日)

12) 三年ニ一度宛國主之用ニテ鮑取ニ參候 (川上健三 『竹島歷史地理的研究』, 權五曄역(2010) 『日本の 獨島論理』, 백산, 154쪽.

13) 三界のシャクワンより鮑取上ケ申様ニテ被仰付、何國と申指図ハ無之由、去年參候者竹嶋へ參候様ニト申聞候由(전계주 10,39쪽).

14) 權靜·大西俊輝(2011) 『안용복과 원록각서』, 한국학술정보, 406쪽.

鳥取藩을 방문한 1696년의 기록인데, 진술한 내용만이 아니라 소지했던 물품이나 서류, 號牌 등의 기록도 있다. 납치된 안용복은 여러 차례 심문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전에 진술한 내용을 비교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다. 長崎 奉行所에서는 鳥取藩과 對馬藩의 家臣들이 동석한 가운데 심문한 다음에, 鳥取藩에서 작성한 구상서와 다름이 없는가를 검토했다.¹⁵⁾ 그 결과

안요쿠호키의 나이는 40세입니다. 그러나 因幡에서는 43세라고 진술했습니다. 이것은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¹⁶⁾

鳥取藩에서 43세라고 작성한 오류를 발견하고 40세로 정정했다. 것처럼 안용복의 진술이 검증 받고 있었으므로, 기록된 내용은 신뢰해도 좋을 것이다. 안용복은 隱岐 番所에서 최초로 진술했는데, 그 내용이 岡嶋正義의 편찬물 『大雜集』·『瑠事錄』·『竹島考』 등에 전한다. 조선인이 소지했다는 호패, 서류, 물품, 진술 내용 등도 기록했다. 그곳에 누락된 船手形과 木札 등은 『竹嶋紀事』가 전하고 있다.¹⁷⁾

隱岐 番所の 보고를 받은 鳥取藩은 조선인의 구상서, 조선인이 지참한 단도, 조선인이 품 속에 간직한 壤中之書付 3통도 첨부하여 막부에 보고했는데,¹⁸⁾ 호패(木札)는 전달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鳥取藩士 岡嶋正義가 편찬물에 그것을 전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조선인이 품속에 간직했다는 서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나, 大西俊輝의 추정대로 포구를 통과하는 통행중이었다면,¹⁹⁾ 안용복이 공적 권력의 허가 하에 해상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岡嶋正義의 편찬물이 전하는 안용복의 신분이나 행적은 기록간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동질적이다. 『大雜集』과 『瑠事錄』은 두 사람의 신분을 다음처럼 정리했다

두 唐人 중 통사가 진술한 것

15) 因幡ニ而之口上書与相違無之様ニ与之御事ニ而少々文句御改被成請書いたし明日差上候様ニ与被仰渡(權五曄·大西俊輝 번역주(2011) 『竹嶋紀事1-1』, 한국학술정보. 220쪽).

16) 朴トラヒ歳三拾四安ヨクホキ歳四拾ニ罷成候、然所ニ因幡ニ而歳四拾三与申上候由ニ御座候得共是又言葉耽与通シ不申候(전계주 15, 246쪽).

17) 木綿拾(五), 布帷子(四), まんきん(弐), 木綿單物上斗(壹), 木綿綿入下斗(壹), 打帶(弐筋), 木綿帶(弐筋), 笠(弐), 木綿足袋(壹足), さすか(壹本), 虎のきはか之指(壹), 船手形(三枚), 木札(弐枚) (전계주 15, 254쪽).

18) 早々御聞役を以御月番御老中土屋相模守様江朝鮮人口上書・同持参之さすが・壤中之書付三通、并村川・大屋船頭之口上書共被遣、段々御老中江右之趣被仰入置候処 (권정(2010) 『御用人日記』, 선인, 28쪽).

19) 전계주 14, 57쪽.

통사 이름은 안헨치우, 在所는 조선 내 툰넨기라는 곳.

하인 이름은 토라헤, 在所는 같은 울산 사람²⁰⁾

안용복과 박어둔을 通辭와 下人으로 구별하고 안헨치우로 불리는 안 용복은 조선의 툰넨키(東萊나 加德)에 거주하는 43 세의 통사로, 토라헤로 불리는 박어둔은 울산에 거주하는 하인으로 구별했다. 그리고 그 옆에 「삼계 샤큐완」의 명으로 울릉도에서 전복을 채취했다는 내용을 기록했는데, 『진사록』은 「내 생각에 샤큐완은 상관을 말하는 것 같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안용복이 상관의 명으로 도해한다는 사실을 시사했다. 『죽도고』는 그것들을 총괄하여

역자가 말하길, 내가 사는 곳은 조선국 경상도 동래현 사람으로 안핀샤라고 <또 안피산, 안 펜치우라고 한다. 모두 정기에 기록되어 있다. 생각하건대 그 나라 사람에게는 안이라는 성이 많다. 안은 아마도 성이고 힌샤와 히산은 무관의 이름으로, 모두 비장의 전어인 것 같다. 또 헨치우라는 것은 이름이다 (중략) 올 봄에 산카이 샤큐한<지금 생각하건대, 산카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세하지 않다. 아마도 부산카이라고 말하는 것을 산카이로 잘못 알아들은 것 같다. 또 샤큐한은 상관, 혹은 장군인가>한테 전복을 잡아서 바치라고 명령을 받았으나, 어떤 섬에 도해하라는 지시는 없었지만, 작년에 이 섬에 유착한 자들이 많이 전복과 미역을 따서 돌아왔다.²¹⁾

안용복과 박어둔의 신분, 그리고 그들에게 어럽을 명한 자의 신분을 기록했다. 안용복은 경상도 東萊縣에 사는 42세로, 안핀샤, 안피산, 안헨치우 등으로 호칭되는데, 안은 성으로, 힌샤와 히산은 비장으로, 펜치우를 이름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어떻게 보아도 펜치우는 龍福과 연계 지을 수 없어, 고려와 조선

20) 唐人貳人內通シ申口, 通シ名ハ、アンヘンチウ年四十三, 在所、朝鮮之内、トクネンギト申所. 下人名ハ、トラヘ, 在所、同クウルサンノ者(전계주서 10, 39쪽·192쪽).

21) 吾ノ在所ハ朝鮮國ノ慶尙道東萊縣ノ者ニテアンピン샤ヤ与ク又アンピシヤン안펜치우ニ作ル俱ニ精記ニ挙ク案ニ彼国ノ人ニ安姓多シ안ハ恐クハ姓ニシテヒン샤ヤ与ヒシヤンハ武官ノ名ニテ俱ニ種將ノ轉語ナル可敷又ヘンチウ与云ルハ名ナル(중략)年齡四十二歲ナリ是ナル者ハ蔚山人ニテトラヘ与云ヘリ年齡卅四歲ナリ當春三界ノシヤクハン<今按ニ三界ト云地詳ナラス恐クハ釜山浦ト云ケルヲ三界ト聞誤リタル事ニヤ又シヤクハンハ上官若クハ將軍ナルベシ>ヨリ鯨捕テ奉レド下知セラレシカ共去バ何レノ嶋ヘ渡海セヨトノ指図ハ無之候得共去年コノ島ヘ流着セル者共夥數鯨芽ノ葉ヲ捕歸リ候(권혁성(2013) 『竹島考』 하권, 인문사, 171쪽).

시대에 활용되었던 行守의 전음일 가능성을 추정한다.

그리고 명을 내린 三界의 사규완을 釜山浦를 관할하는 상관이나 장군으로 추정하여, 안용복이 공적 권력의 허가를 받고 해상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기록했다. 이곳의 42세는 전술한대로 長崎奉行所가 40세로 정정했기 때문에, 1693년의 안용복은 40세로 부산 동래에 거주하며, 釜山僉使의 명을 받고 울릉도에 도해했다는 것이 된다.

안용복은 납치되었다 송환되고도 2년 형을 받았었다. 그런 안용복이 형기가 종료되고 2개월도 안되었을 1696년 3월 18일에 對馬藩의 비리를 소송하겠다고 朝鬱兩島監稅長臣安同知騎·朝鮮國安同知乘舟라는 船旗를 달고 鳥取藩을 방문했는데, 그때 칭한 관명이 岡嶋正義의 편찬물과 隱岐의 代官이 정리한 『元祿覺書』에 전한다. 『大雜集』은 일행 11인의 신분을

三品堂上臣安同知·進士軍官李裨將·釈氏憲判事金鳥僧將·帶率金裨將·船格金沙工·劉格率劉漢夫·釈氏帶率僧·淡法主·習化上·律化上·責化上

李進士의 기록으로 해서 정리했다. 『玆事錄』은 『因藩志』를 원전으로 밝히고

三品堂上臣安同知·金鳥僧將釋氏憲判事·進士軍官李裨將·金裨將·帶率金沙工·劉格率·舟ノ囿ニ水主ナリ劉漢夫·釋氏帶率僧ユクワイ淡法主·ユクワイ習化主·エンニウリ律化主·タンサキ責化主

일행의 신분을 약간 구체화했다. 『죽도고』는 같은 명단을 전하면서 朝鬱兩島監稅長臣安同知騎·朝鮮國安同知乘舟라는 내용의 船旗가 靑谷의 茶屋兵助의 소지품이라는 출처를 밝혔다. 이처럼 기록들은 안용복을 三品堂上臣安同知·監稅將으로 하고 있다. 그 안용복 일행의 鳥取藩 방문을 『죽도고』는 「조선 국이 우리 번에 사신이 탄 배를 보냈다(朝鮮國通ス使舶ヲ于本藩)」라고 기록하여, 鳥取藩이 안용복 일행을 使節團으로 인식하고 대우한 사실을 분명히 했다.

『元祿覺書』가 전하는 1696년의 안용복은, 나이를 제외하고는 岡嶋正義의 편찬물이 전하는 기록의 내용과 같다. 『元祿覺書』는

안용복은 午年(1654)에 태어난 사람으로, 나이는 43세다. 관과 같은 검은 삿갓을 머리에 쓰고, 수정을 단 끈으로 메었다. 열은 노랑색 목면으로 지은 저고리를 입고 있다. 또 허리에 패를 차고 있다. 패의 표면에는 통정대부 안용복 갑오년(1654)에 태어났다 라고 있다.²²⁾

안용복의 진술 내용과 안용복이 소지한 호패의 내용을 전하는데, 같은 내용이다. 갑오년(1654) 생인 안용복이 1696년에 43세라는 내용인데, 호패의 내용은 그것에 通政大夫라는 관명을 추가했다. 그 通政大夫는 岡嶋正義의 편찬물이 전하는 三品堂上臣安同知와 같은 품계로, 岡嶋正義의 편찬물과 『元祿覺書』가 나이를 제외하고는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기록의 안용복은 조선 東來縣에서 1654년에 태어나, 40세인 1693년에는 裨將·兵使·行守 등을 칭하고, 43세인 1696년에는 同知·監稅將·通政大夫 등을 칭하고 있었다.

3. 안용복의 호패

(1) 牌面의 合體字

안용복이 호패라는 것은 두 개가 전한다. 하나는 1693년에 소지했다는 것을 岡嶋正義가 19세기에 정리한 자신의 편찬물에 전사한 것이고 또 하나는 1696년에 안용복의 소지했다는 것을 隱岐 代官이 그 내용을 『元祿覺書』에 기록한 것이다. 같은 안용복의 호패라는데 이상하게도 동일인으로 볼 수 없을 만큼 내용이 다르다. 그뿐만 아니라 岡嶋正義가 전사했다는 호패는 그가 정리한 편찬물의 내용과도 다르다. 반면에 『元祿覺書』는 기록과 호패의 내용이 같고, 여타 기록들이 전하는 내용과도 같다.

말하자면 『元祿覺書』에 기록된 내용과 호패의 내용, 그리고 岡嶋正義의 기록이 내용을 같이하는 것에 반해, 岡嶋正義가 전사한 호패는 여타 기록들과 내용을 달리한다. 그래서 岡嶋正義는 호패를 전사하면서 그것을 인식하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 같으니 규명해야 한다는 주를 달았다.

그 호패를 『大雜集』과 『珍事錄』은 「조선인이 가슴에 걸고 있는 찰(唐人胸ニ懸申候札)로 소개하고, 물품 목록에는 木札로 기록했다. 그것을 『죽도고』는

두 명의 조선인의 잠방이 끈에 작은 패를 매달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것인가 라고 물었더니, 안편샤가 답하기를, 우리 나라에서는 이 패가 없으면 사회적 교류를 하기 어렵다. 그래서 은 40목씩 세금을 내고 이것을 구했

22) 安龍福午歲四十三冠ノヤウナル黒キ笠水精ノ緒アサキ木綿ノウハキヲ着申候腰ニ札ヲ巻ツ着ケ申候表ニ通政太夫安龍福 年甲午年表ニ住東萊(權五曄・大西俊輝(2009) 『元祿覺書』, 제이앤씨, 96쪽).

다, 라고 말했다.²³⁾

가슴이 아닌 허리끈(朝鮮人股引ノ紐ニ小キ牌)에 찬 패, 즉 腰牌라 했다.札이 牌로 바뀌고 위치가 가슴에서 허리로 바뀌었다.岡嶋正義가 전사한 호패는 다음과 같다.

アンピンシヤ腰牌表面

東 私蟹卜年三十三長
四尺一寸面鉄髭暫生疤無
萊 主京屋吳忠秋

同裏面

庚 釜山佐自川一里
第十四統三戶

이 호패의 옆에 朴於屯의 호패를 전사한 다음에 「지금 생각하건 데, 이 패면의 문자는 아마도 전사할 때의 오류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후일의 식자에 의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주를 달았다.岡嶋는 17세기의 자료들을 수집하여 정리하는 가운데, 안용복과 박어둔의 것으로 볼 수 있는 호패를 발견하고 그것을 전사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안용복의 호패라는 것과 안용복을 심문하거나 안용복 자신이 진술한 것을 기록한 것과 내용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런 주를 단 것이다.岡嶋의 그림 주가 없다 해도 안용복의 호패라는 것을 보면 여타 기록이 전하는 것과 내용이 크게 다르다는 것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안용복의 것이라는 이 腰牌에는 해독하기 어려운 合體字와 안용복의 것으로 생각할 수 없는 나이와 신장의 기록이 있다. 이 요패를 안용복의 것으로 보려면 私蟹卜을 「私奴安龍福」으로 해독하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나이가 다른 기록과 다른 이유, 안용복의 신장이 四尺一寸로 기록된 이유 등을 밝혀야 한다.

호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호패의 주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성명을 기록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岡嶋가 필사한 호패는 그 부분이 私蟹卜으로 되어 있어 醵刻하기 어렵다, 번각하기 어려운 蟹은 성과 이름의 첫 자인 安龍으로

23) 二人ノ朝鮮人股引ノ紐ニ小キ牌ヲ結付居ケル(중략)吾邦ニテ此牌無者ハ世間ノ交リ難シ相成リ依之銀四拾目ツツノ運上ヲ出シテ是ヲ受ル事也ト語リケルトゾ(전계주 21, 195쪽).

해독해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그것을 奴用으로 해독하고, 전후를 私奴用卜으로 해독한다. 그리고 用卜을 龍福, 安龍福으로 전환시키며, 호패를 安龍福의 것으로 단정한다. 龍福을 왜 奴用으로 번각하고 그것을 왜 龍福·安龍福으로 전환하는가에 대한 설명은 없다. 성이 생략된 이유의 설명도 없다. 그저 노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정도다.

문자가 배열된 공간을 보아도 『大雜集』과 『竹島考』의 私龍福卜은 다음 줄의 尺一寸 3자와 대응된다. 말하자면 龍福은 二字가 아닌 一字의 공간을 점하고 있다. 공간의 여유도 충분하여 二字를龍福一字로 合體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宋炳基는

안용복은 서울에 사는 오중추의 사노비로 주소를 부산 좌자천 1리 14통 3호(현재 부산 동구 좌자천)에 두고 있다. 즉 그는 사노비이자 외거노비였던 것이다. 그는 노비이기 때문에 성도 없이 用卜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²⁴⁾

그 호패를 안용복의 것으로 추정하고, 그 호패에 근거하여 안용복을 성도 없는 사노비로 단정했는데, 그것은 호패와 기록의 차이나 호패의 모순점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정으로 보아야 한다. 『속중실록』 등이 전하는 安龍福의 진술이나 安龍福像을 감안하지 않은 추정이다. 기록들이 安龍福으로 기록하는 것을 호패가 用卜으로 기록한 이유의 설명도 없다. 그저 美稱으로 추정하는 정도이다.²⁵⁾

안용복이 진술한 내용을 「모두 허구라는 것이 명백하다」며 부정하는 川上健三도 호패에 근거해서 안용복을 부정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²⁶⁾ 다만 자체 모순도 두려워하지 않는 下條正男은 편자의 주를 언급하면서도 호패의 내용에 근거하여 안용복의 실체를 논하였다. 그 외에 호패에 근거해서 안용복의 실체를 논하려는 일본 연구자는 없는 것 같다. 그것은 池內敏이 안용복과 박어둔의 호패를 소개하고 「사료문의 해독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宋炳基(2006)의 해독을 근거로, 몇 개의 자구를 정정하면서 두 호패에 대하여 검토해보자」²⁷⁾라고 자설의 근거를 한국 학자의 주장에서 구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일이다. 안용복의 것으로 보기에 모순점이 많은 호패를 안용복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단서를 우리가 제공하여, 안용복을 부정하는 논리를 구축하려는 일본에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24) 宋炳基(2010)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49쪽.

25) 전계주 14, 61쪽.

26) 전계주 12, 185쪽.

27) 池內敏(2009) 「安龍福英雄傳説形成」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文集』, 名古屋大學, 5頁.

그런데 그런 인식은 송병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조선시대의 신분제도를 연구한 학자 중에서는, 부산의 佐自川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수군에 종사한 자는 무조건 천민이고, 호패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은 흔한 일이기 때문에, 그 호패는 안용복의 것이 분명하고 안용복은 당연히 사노라는 주장을 하는 연구자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이처럼 시대적 특성을 절대 기준으로 한다면 그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기록 활동에는 정사의 구별이 없게 되어 진실을 규명할 근거를 상실하고 만다. 기록 자체가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된다.

17세기의 일본은 기록의 정사를 엄격히 검증했다. 그것은 鳥取藩에서 작성한 口上書を 長崎奉行所가 對馬藩과 鳥取藩의 사자를 동석시킨 가운데, 안용복의 나이 43세가 40세의 오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정한 사실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조선의 17세기 기록에는 오류가 있어 당연하고 오류가 많아도 목적에 따라 해독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역사학자 일부의 주장이나, 어떤 사실이 기록되어 전한다는 사실을 중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2) 年三十三의 허실

岡嶋正義는 『죽도고』에 호패를 전사하며 『大雜集』과 『瑣事錄』에 없는 주를 달았다.

지금 생각하건대, 이 패면의 문자에는 아마도 전사할 때의 오류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후일의 식자에 의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²⁸⁾

적어도 3번은 필사한 호패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 같으니 규명해야 한다는 주를 달았다. 호패를 필사하기 전에 안용복의 출생이나 신분 등을 정리하여 기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호패를 전사하면서 내용의 오류를 인식한 것이다. 그런데도 下條正男은

호패가 만들어졌을 때, 안용복은 33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안용복이 일본에 끌려왔던 원록 6년(癸酉)은 「庚午」에서 3년 후로, 안용복이 36세였을 때였다는 것이 된다.²⁹⁾

호패의 나이가 타 기록과 다르다는 사실에 의문도 표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했다. 송병기도

나이드 일본 선원들에게 42세라고 하였지만 호패를 발급한 경오년(1690년,

28) 今按ニ此牌面ノ文字恐ハ傳写ノ謬アラン後日識者ニ可糺ス(전계주 21, 205쪽).

29) 下條正男(2006)『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 文藝春秋, 33頁.

속종16) 당시 33세였으므로 1693년 현재 36세가 된다.³⁰⁾

岡嶋正義가 강조한 주나 타 기록이 전하는 나이와 다르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호패의 나이를 안용복의 나이로 인정했다. 이처럼 가운데 池內敏은

年三十三도 전사 과정의 착오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원록 9년에 소지한 號牌(戶牌)에 의하면, 안용복의 생년은 갑오년으로, 이것은 1654년에 상당한다. 한 편 號牌(戶牌)에는 그 작성시의 연령이 기록되는데, 이편의 기재에 보이는 작성 년은 경오년 즉 1690년이다. 1690년의 안용복은 37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年三十三은 年三十七의 착오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마도 어두운 색을 한 작은 木片(길이 7cm정도, 폭2cm정도)에 인각된 작은 글씨이기 때문에 삼과 칠을 잘못 보는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³¹⁾

나이를 傳寫의 오류로 보았다. 타 기록과 비교하여 1654년생의 안용복이 1690년에는 37세가 된다는 사실에 맞춘 추정이었다. 그러나 岡嶋正義가 3번 이상을 전사하면서 의문을 표한 호패의 내용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삼과 칠을 구별하지 못하는 일은 있기 어렵다. 전사한 원본의 삼과 칠을 구별하기 어려웠다면, 자신이 기록한 내용에 맞추어서 三十七로 전사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三十三으로 필사한 것은 그렇게 판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岡嶋正義는 『죽도고』에 「大谷家の 선인들이 조선인을 납치하다(大谷之船人拿歸朝鮮人)」라는 장을 설치하고, 납치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안용복과 박어둔의 신상을 설명하는 가운데 『大雜集』과 『瑣事錄』의 43세와 다른 42세로 기록했다.³²⁾ 그런데 호패의 내용대로 호패가 발행된 경오년(1690)에 33세였다면 납치된 계유년(1693)에는 36세로, 편찬물의 42,3세와 다르기 때문에, 호패의 오기라고 판단하고 주를 단 것이다. 이처럼 동일인이 정리한 기록과 호패 사이에 6,7세의 차이가 있어, 기록과 호패를 동인인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長崎奉行所에서는 안용복을 심문하고 口上書를 작성할 때, 鳥取藩에서 43세라고 기록한 것은 언어상의 오류였다고 40세로 정정했는데, 그것은 『元綠覺書』의 나이와 같다. 『元綠覺書』는 갑오년(1654)생 안용복이 1696년에 43세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허리에는 패를 차고 있다. 패의

30) 전계주 24, 49쪽.

31) 전계주 27, 129頁.

32) 尤此時ノ異客始終筆硯ヲ不採ユヘ其本字不傳實ニ舞筆ナリシ事ニヤソノ精實ノ程難察ト云々>云年齡四十二歲ナリ(전계주 21,174쪽).

표면에 通政大夫 안용복 갑오년에 태어났다」라고 있다.

허리에 차고 있었다는 호패의 내용을 소개했는데, 기록과 같은 나이로 通政大夫를 칭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기록했다. 그 통정대부는 岡嶋正義의 편찬물이 전하는 三品堂上臣安同知와 같은 위계의 관명이다. 岡嶋正義의 기록들은 내용을 같이할 뿐만 아니라 『元緣覺書』와도 같은 내용을 전한다. 이처럼 기록들은 안용복이 갑오년(1654) 생으로, 1693년에는 40세, 1696년에는 43세로 通政大夫를 칭한 사실을 전하는데 岡嶋正義가 전사한 호패만이 다른 내용을 전하여, 그 호패는 안용복이 소지했다 해도 안용복의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3) 四尺一寸의 신장

호패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이 四尺一寸이라는 신장이다. 울릉도에 서 만난 왜인을 추방했다는 진술이나 猛省強暴하다는 鳥取藩의 기록에 근거 하면 안용복은 기골이 장대하고 활달한 인물로 추정할 수 있어 四尺一寸은 안용복의 신장으로 보기 어렵다.

호패의 신장에는 누구나 의문은 표한다. 下條正男은 당시 兵卒들의 명부 등에 5척(150cm) 이하의 군병이 없다며 誤寫로 보았고,³³⁾ 宋炳基도 4척 1촌을 현행 尺制로 계산하면 123cm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너무 작기 때문에, 옮겨 적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³⁴⁾ 池內敏은 송명기의 의견을 소개하면서도 의견은 표하지 않았으나 「마찬가지로(同様に)」³⁵⁾라는 말에 이어 33세가 오기라고 표현하는 방법으로 동조했다. 그런 가운데 大西俊輝는

軍裝의 키(着背長, 즉 어깨까지의 높이)는 4척 1촌(124cm)이고, 그 위에 있는 얼굴은 철벽(屈強) 같으며 약간의 수염이 있다는 것이다. 그 안면에는 특징이 되는 상처 등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단단한 160cm 정도의 체구이다.

색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호패의 신장은 발에서 어깨까지의 길이로, 머리 길이는 생략했다는 것으로, 四尺一寸에 머리를 합하면 160cm 정도가 된다는 것이다.³⁶⁾ 160cm 정도의 신장이라면 長身은 아니나 수군으로 근무할 수는 있다. 그러나 123cm의 신장에 머리가 37cm 정도라면 균형이 맞지 않아, 역시 군역이나 해상 활동에는 적합하지 않다. 포목상의 尺度法에 의하면 185

33) 전계주 29, 13頁

34) 전계주 24, 49쪽.

35) 전계주 27, 129頁.

36) 전계주 14, 61쪽.

cm 가 된다는 의견도 있으나,³⁷⁾ 호패에 특수한 척도법을 적용한 근거의 제시가 없다.

조선인을 납치한 船頭들은 납치의 정당성을 입증할만한 진술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납치한 순간부터 원하는 진술을 확보하는 심문을 해야 했다. 그런데도 납치한 사실을 隱岐 番所에 신고한 船頭들은 口上書의 제출을 거부하고, 番所가 작성한 口上書에 날인하는 것도 거부했다.³⁸⁾ 안용복이 납치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반항하여 원하는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반응으로 보아야 한다. 선두들은 납치선상에서 원하는 답을 들으려고 심문했으나, 안용복이 납치의 비리를 지적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것과 다른 내용을 진술했기 때문에 口上書를 작성할 수 없었고, 그래서 제출과 날인을 거부한 것이다.

隱岐 番所는 口上書를 작성한 후에 안용복과 박어둔에게 술을 주었는데,³⁹⁾ 그것은 안용복이 요구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안용복은 그 후에도 「여러 가지로 무리한 요구(色々わやく申候)」를 한 것으로 기록될 정도로 외출과 음주를 요구했다.⁴⁰⁾ 납치된 상황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당당하게 요구하는 안용복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의 기록이다. 그런 안용복이었기 때문에 「이객 중에 포악한 자가 있다」⁴¹⁾라는 소문이 鳥取藩에 퍼졌고, 실제로 鳥取藩은

안판샤는 맹성강폭한 자라고 전부터 들었기 때문에, 혹시 거친 행동 등이 있으면 위험하므로 부녀자와 유아가 도로에 나와서 구경하는 것을 금지시켰다.⁴²⁾

안용복과 박어둔을 요나고(米子)에서 鳥取로 이동시킬 때 이런 경고까지 내려 부녀자와 유아들의 접근을 금지시키기도 했다. 그런 경고는 안용복을 경험한 船頭, 大谷家の 사람들, 鳥取藩의 관리들의 경험에 근거하는 소문에 바탕을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안용복과 접촉한 사람들 것처럼 위압감이나 공포심

37) 안기태(2007) 『안용복 장군님 고맙습니다』 (사단법인 안용복장군기념사업회).

38) 然所ニ隱岐御番所ニおいて私共被召出、(중략)御直ニ御聞被遊候様ニ申上候(중략)唐人之口上書書上ヶ申候、私共へも右唐人之口上書ニ判仕候様ニ御意被成候へ共、達而御断申上判形不仕候(전계주 12, 158쪽).

39) 其後御番所より唐人江酒樽被遣候(전계주 10, 220쪽).

40) あんひじゃん気晴ニ出可申由、色々わやく申候由、修理迄申來候へ共、外江出候儀不通ニ無用と差図申事。且又酒給申度由申候へ共、是又昼夜ニ三升より上は無用之由申達事(權五曄(2010) 『控帳』, 책사랑, 77쪽) .

41) 此度、異客ノ内へ暴惡ノ者有之由相聞エ候ユエナリ(전계주 10,109쪽).

42) 其内女わらんべ見物罷出儀は可爲無用朝鮮人狼藉も可致様子相聞候間(전계주 40, 106頁) .

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을 박병섭은 감금생활이 1개월 이상 지속되었기 때문에 술에 취해서 부린 소동으로 보았으나,⁴³⁾ 그렇다 해도 그 정도로 울분을 토한 안용복이었다면 4척1촌(123cm)이라는 단구의 나약한 자라기 보다는 기골이 장대하고 활달한 남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4척 1촌이라는 신장은 안용복의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런 내용이 기록된 호패 역시 안용복의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4. 결론

조선의 기록은 櫓軍·鬱陵子山兩島監稅將이라는 안용복의 신분을 전하나 그 실질을 확인시켜주는 기록은 없다. 鬱陵子山兩島監稅將이라는 관명은 『星湖僿說』의 賤出과 모순적이라 詐稱으로 보기도 하는데, 안용복의 활동이나 남구만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면 그렇지 만도 않다.

일본의 기록은 안용복의 신분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전한다. 납치된 안용복을 처음으로 심문한 隱岐番所는 안용복과 박어둔을 通辭와 下人으로 구별하고, 안용복이 진술한 내용을 口上書로 정리하여 관계요로에 보고했다

그 보고를 받은 鳥取藩은 안용복과 박어둔의 소지품을 첨부하여 막부에 전달하면서 두 사람이 소지했다는 호패는 누락시켰는지, 후세의 鳥取藩士 岡嶋正義가 자신의 편찬물에 전사하여 현재까지 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다른 기록들과 많이 다르다.

편찬물은 1654년생 안용복이 1693년에는 43세의 裨將으로 기록하고, 1696년에는 三品堂上臣安同知·監稅將 등을 칭한 것으로 했다. 그런데 長崎奉行所에서 43세가 40세의 오류라는 것을 발견하고 정정했기 때문에, 안용복은 1654년 출생으로 1693년에는 40세 1696년에는 43세라는 것이 확실하다. 그것은 1654년생의 안용복이 1696년에 43세였다고 전하는 『元綠覺書』의 내용과도 일치하여 신뢰할 수 있다.

鳥取藩을 향하다 隱岐에 표착한 안용복 일행과 대담하고 관찰한 내용을 番所가 정리하여 관계요로에 보고한 보고서의 일부가 『元綠覺書』로 전하는데, 그곳에 안용복의 진술한 내용과 호패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호패의 내용으로 소개되는 「통정대부 안용복은 갑오년 출생(通政大夫安龍福 年甲午生)」은, 1654년생 안용복이 1696년에 통정대부라는 官名을 칭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편찬물의 안용복도 1693년에 裨將이나 行守를 의미하는 안핀샤, 안히산, 안펜치우(行守) 등을 칭했고, 1696년에는 三品堂上臣安同知를 칭하며 朝鬱兩島

43) 朴炳涉(2007) 『안용복 사건에 대한 검증』 (한국수산해양개발원, 32쪽).

監稅長臣安同知騎·朝鮮國安同知乘舟라는 선기를 건 사실을 전한다. 편찬물의 同知·監稅將은 『元綠覺書』의 通政大夫와 같은 품계다. 편찬물과 『元綠覺書』가 전하는 관명이 상통한데, 岡嶋正義가 전사했다는 호패는 내용을 달리 한다.

호패에는 해독할 수 없는 合體字가 있고, 1690년의 나이를 34세로, 신장을 123cm로 하는 내용이 있다. 合體字를 奴用으로 해독하고, 그 부분을 私奴用卜으로 한 다음에 用卜을 安龍福으로 전환하여, 안용복을 私奴로 단정하는데, 그렇게 해독하는 이유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호패에서 가장 중요한 성이 누락된 이유를 私奴婢라는 신분에서 찾을 정도다. 4척 1촌(123cm)이라는 신장은 軍役이나 해상 활동과 적합하지 않고 暴惡·猛省強暴하다는 소문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안용복은 억류된 상황에서도 무리하다 말할 정도로 외출이나 음주를 요구하여, 행패를 부리는 위험한 인물로 소문이 나, 안용복을 이송하면서 여자나 유아가 접근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킬 정도였다. 그런 안용복의 신장을 호패의 내용에 근거해서 123cm로 볼 수는 없다. 1690년에 33세라는 나이도 1654년생인 안용복과는 맞지 않는다. 그런데도 연구자들은 그 호패를 안용복의 것으로 맹신하고, 그 내용에 근거해서 안용복의 실체를 논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부산의 해변에 살거나 수군에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 천민이고, 17세기의 기록에는 오류가 많은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호패가 보이는 모순 점과 관계없이 호패는 안용복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조선시대의 신분제도를 연구한 학자 중에서 나온다. 그러나 그렇게 당시의 기록을 인정한다는 것은, 당시에 이루어진 기록 전체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이다. 당시의 기록으로는 정사를 구별할 수 없으므로, 필요에 따라 적당히 추정해도 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어 동조하기 어렵다.

안용복이 칭했다는 관명도 기록 간에는 모순이 없다. 1693년의 안용복이 칭한 裨將은 1696년의 同知·監稅將·通政大夫 등과 연계 가능하다. 그러나 호패의 내용대로 1693년의 안용복이 사노였다면 1696년에 칭한 通政大夫나 三品堂上臣安同知 등과는 이질적이다. 안용복을 천출로 본다 해도 당대에 실행된 納粟制度에 참여하면 通政大夫와 같은 관명은 칭할 수 있어,⁴⁴⁾ 전체적인 면에서는 변함이 없으나, 애매한 호패에 근거하여 안용복의 신분을 사노로 단정하는 주장에는 동조할 수 없다.

鳥取藩은 안용복의 송환할 때 가마에 태우고 90인이 호송했고, 1696년에는 일행 11인을 가마와 傳馬로 영접하며 사절단 예우를 취했다. 안용복이 칭한 관명을 인정한 대접이었다. 그런데 호패만이 다른 출생과 신분을 전한다. 성명은 해독할 수 없고, 나이와 신장은 안용복의 그것으로 볼 수 없는 내용이다. 특히 4척 1촌이라는 신장은 해상 활동이나 군역에 적합하지 않는 단구다. 따

44) 권오엽(2009) 「通政大夫安龍福」, 『日本語教育』 제50輯, 韓國日本語教育學會, 256쪽.

라서 그 호패를 안용복이 소지했다 해도 안용복의 것으로는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參考文獻】

- 李瀆 『星湖僿說』, 愼鏞廈編著 『獨島研究叢書』 5(1998), 독도연구보전협회, 290頁.
 『承政院日記』, 김관용(2010) 『독도사료연구회 연구보고서』, 경상북도. 112頁.
 『肅宗實錄』, 愼鏞廈編著 『獨島研究叢書』 5, 독도연구보전협회, 117頁.
 『漂人領來謄錄』, 김관용(2010) 『독도사료연구회 연구보고서』, 경상북도. 112頁.
 『備邊司謄錄』 김관용(2010) 『독도사료연구회 연구보고서』, 경상북도. 95頁.
 山本博文(1995) 『對馬藩江戸家老』, 講談社, 23頁.
 川上健三(1996) 『竹島歷史地理的研究』, 古今書院, 171頁
 下條正男(2006) 『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 文藝春秋, 33頁.
 안기태(2007) 『안용복 장군님 고맙습니다』, 사단법인 안용복장군 기념사업회,
 朴炳涉(2007) 『안용복 사건에 대한 검증』, 한국수산해양개발원, 32頁.
 權五曄(2009) 「通政大夫安龍福」 『日本語教育』 제50輯, 韓國日本語教育學會, 256頁.
 權五曄·大西俊輝(2009) 『元祿覺書』, 제이앤씨, 96頁.
 權靜 편역주(2010) 『御用人日記』, 선인, 28頁.
 川上健三 著·權五曄 역(2010) 『일본의 독도논리』, 백산자료원, 185頁.
 宋炳基(2010)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49頁
 權五曄 역주(2010) 『控帳』, 책사랑, 77頁.
 權五曄·大西俊輝 (2011) 『竹嶋紀事1-1』, 한국학술정보. 220頁.
 權五曄·大西俊輝(2011) 『竹嶋紀事』1-3, 한국학술정보, 394頁..
 權五曄·大西俊輝(2012) 『竹嶋紀事』 4-2. 한국학술정보, 365頁.
 權五曄 편주(2011) 『岡嶋正義古文書』, 선인, 151頁.
 權靜·大西俊輝(2011) 『안용복과 원록각서』, 한국학술정보, 406頁.
 權五曄·大西俊輝(2012) 『竹嶋紀事』 4-2. 한국학술정보, 365頁.
 池内敏(2012) 『竹島問題は何か』 名古屋大學出版会, 176頁..
 權赫晟 역주(2013) 『竹島考』 하권, 인문사, 171頁..

要 旨

安龍福に関する記録は思ったより多いといえる。安龍福を拉致した大谷家の記録『竹島渡海由來記抜書控』、拉致した安龍福を半年間も拘留して尋問した対馬藩の記録『竹嶋紀事』、鳥取藩を訪問する目的を言明した安龍福一行を観察して記録した『元録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拉致された安龍福と訪問してきた安龍福とともに記録した鳥取藩の『控帳』『御用人日記』、後世の民族主義者で日本の利益のみを思う鳥取藩の儒学者岡島正義が偏した『増補珍事録』『因府歴年大雜集』『因府年表』『竹島考』などがある。その記録が伝えるところによると、安龍福は1654年に釜山の佐自川で生まれた商人で日本語に長じていた。拉致された1693年には裨將を、鳥取藩を訪問した1696年には朝鬱兩島監稅長臣・三品堂上官安同知・通政大夫などの官名を名乗っていた。

ところが岡嶋正義の編纂物には安龍福の「号牌」というものが筆写されているが、諸記録とは内容を異にする。年が6~7歳も違い、身長は123cmと低かったことになっている。そのうえ持ち主の姓名が読み難い合体字になっている。このように諸記録と内容が異なることを認識した編者は「今按此牌面ノ文字恐クハ伝写ノ謬アラン後日識者に可糾ス」という注まで付けた。

安龍福の号牌は1693年のものを筆写したという岡島正義の編纂物のみでなく『元録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にも見えるが、この内容は諸記録と同じく、1654年生まれ安龍福が1696年に通政大夫を称した事実などを伝えている。

なのに、20世紀の研究者たちはその号牌に根拠して安龍福を評価し、安龍福の実体を判断しようとしている。日本は安龍福が代表する朝鮮の独島認識を否定してこそ自国の論理、即ち、無主地先占論を維持できるので、そう主張する。ところが、安龍福の活動から独島の歴史的正当性を確認しようとする研究者らもその主張に同意する流れである。

しかし、岡嶋正義の編纂物の号牌は編者が注したとおりに誤りが多い。事実を糾明しないで、そのまま活用することは正しくない。編者の注や号牌の内容から見て、その号牌は安龍福が持っていたとしても安龍福のものとは考えられない。従ってその号牌を根拠にして安龍福の実体を論じた研究物は廃棄するか、再考するべきであろう。

キーワード：安龍福 岡島正義 通政大夫 合体字 身長 私奴 拉致 鳥取

투 고 : 2014. 11. 30

1차 심사 : 2014. 12. 13

2차 심사 : 2015. 1. 3